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6년 1월 24일

제안자 : 이 범 윤 의 원 외

□ 제안이유

- 2006년 학교신설 1명 및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 22명은 증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2007년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46명과 교원업무경감 인력 증원 18명은 증원의 시급성이 없고 인력증원의 세부추진계획의 미 수립으로 정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함

□ 주요내용

-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“3,072명”을 “3,008명”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“3,059명”을 “2,995명”으로 한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“3,072명”을 “3,008명”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“3,059명”을 “2,995명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 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,985명</u> 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 기관, 지역교육청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972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<u>3,072명</u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3,059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<u>3,008명</u>....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<u>2,995명</u></p>

[관계법령 발췌서]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개정 2004.1.29 대통령령 제8247호)

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표준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제19조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(개정 2004.1.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)

제3조(표준정원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“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정원”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“보정정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 2206, 2005.12.21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3,072	3,164	